

DMFC 1-30-70

제정: 2009. 10. 1.

개정: 2012. 4. 3.

# 국방·군사시설기준

## 신기술·우수제품 적용지침



국방부

## 목 차

제1장 일반사항 .....	1
1-1 목적 .....	1
1-2 적용범위 .....	1
1-3 구성내용 .....	1
1-4 용어 및 약어 .....	1
1-5 관련법규 .....	3
1-6 참고문헌 .....	3
제2장 업무절차 .....	4
2-1 업무 흐름도 .....	4
2-2 신기술적용 제안 .....	6
2-3 신기술적용 검토 .....	7
2-4 신기술 관련부서의 승인 .....	8
2-5 신기술의 설계적용 .....	8
2-6 시공후 업무 .....	8
제3장 신기술 현장적용 기준 .....	10
3-1 목적 .....	10
3-2 위원회의 심의 등 .....	10
3-3 유사신기술의 활용 .....	11
3-4 신기술의 사후관리 등 .....	11
제4장 녹색제품 사용기준 .....	12
4-1 공사 계획시 적용기준 .....	12
4-2 설계 및 시방서 작성시 적용기준 .....	12
4-3 용역계약서 적용기준 .....	12
4-4 의무사용 예외사항 .....	12
별지1 신기술문서양식 .....	13

## 제1장 일반사항

### 1-1 목 적

본 지침은 군 시설의 건설기술 수준 향상을 위하여 군사시설 건설공사에 신기술, 우수제품, 녹색제품을 적극 활용하도록 설계단계에서부터 신기술, 우수제품, 녹색제품 적용을 제안·검토·승인하는 업무에 대하여 지침을 제공하는데 있다.

### 1-2 적용범위

본 지침은 국방부 직할기관 및 육·해·공군에서 시행하는 군사시설 건설공사에 적용한다. 설계자와 설계감독관 등은 설계시의 신기술, 우수제품, 녹색제품의 적용은 본 절차에 따라 업무를 수행한다.

### 1-3 구성내용

- 업무절차
- 신기술 현장적용기준
- 녹색제품 사용기준

### 1-4 용어 및 약어

- “발주청(기관)”은 신기술이 적용되는 건설공사를 발주하는 법 제2조제5호에서 정한 기관의 장을 말한다.
- “신기술활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법 제5조의2의 규정에 의한 발주청의 「설계자문위원회」 또는 발주청이 신기술의 설계 및 시공 등의 적정성을 심의하기 위하여 구성한 위원회를 말한다.
- “기술평가기관”은 법 제16의3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기관을 말한다.
- 특수공법, 특수재료
  - 국내에서 시행한 바 없는 공법과 재료로서, 공인기관(관련학회, 공인연구소 등)의 기술검토서를 첨부한 것을 말한다.
  - 기타 신규성·유일성·경제성 등에서 적용의 가치가 있다고 평가되는 기술 일체를 말한다.
- 시험시공  
신기술의 성능 등을 확인하기 위해 군 시설공사에 최초로 신기술을 적용 시행한 시공을 말한다.
- 신기술, 우수제품
  - 당해 인증기관에서 품질보증을 받은 제품 및 공법을 말한다.

- 국방부에서 적용을 권고하는 기술 및 제품을 말한다.
- “녹색제품”은 에너지 · 자원의 투입과 오염물질의 발생을 최소화하는 제품을 말한다.
  - 환경표지 인증제품 및 동 인증기준에 적합한 상품을 말한다.
  - 우수재활용(GR) 인증상품 및 동 인증기준에 적합한 상품을 말한다.

구 분	명 칭	인증(지정)기관	유효/ 연장(년)	시행근거
신기술	신기술 (NET)	국토해양부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	3/7	건설기술관리법 제18조
		지식경제부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5조의2, 제17조
		환경부 (한국환경기술진흥원)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 제7조 동법 시행령 제19조3
	전력신기술	지식경제부 (대한전기협회)	5/10	전력기술관리법 제6조2 동법 시행령 제7조4
	자연재해저감 신기술	소방방재청	3/7	자연재해대책법 제61조 동법 시행령 제49조
	녹색기술	지식경제부	2/0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32조
		국토해양부		녹색인증제 운영요령 제27조
		환경부		
우수 제품	신제품 (NEP)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	3/3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6조, 제17조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및판로지원에관한 법률 제14조
	대기전력 저감대상제품	지식경제부 (에너지관리공단)	-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18조, 제20조
	고효율에너지 기자재(E마크)		3/3	제22조
	우수제품지정	조달청	3/1	조달사업에관한법률 제9조의2,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및판로지원에관한 법률 제14조
	우수발명품 우선구매추천	한국발명진흥회	3/0	발명진흥법 제39조
	성능인증제품 (EPC)	중소기업청 (지방중소기업청)	3/3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및판로지원에관한 법률 제14조, 제15조
녹색 제품	환경표지인증	환경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3/2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 제17조 녹색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제2조의2
	우수재활용(GR)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	3/3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제33조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5조

### 1-5 관련법규

-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동시행령/동시행규칙
-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동시행령/동시행규칙
- 건설 기술관리법 (일부개정 2008. 3. 28 법률 제 9056호)
- 건설 기술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 2008. 12. 24 대통령령 제 21181호)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08. 2. 29 법률 제 8852호)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2008. 12. 31. 대통령령 제 21202호)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일부개정 2007. 10. 10. 기획재정부령 제 578호)
- 건설 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2008. 10. 2. 국토해양부령 제 59호)
- 녹색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동시행령/동시행규칙

### 1-6 참고문헌

- 신기술 현장 적용 기준 개정(국토해양부 훈령 : 2008. 12. )
- 신기술의 평가기준 및 평가절차 등에 관한 규정 개정, (국토해양부, 2008. 12.)
- 신기술 (특허 포함) 적용 위한 기준,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제5조 2항  
(회계예규, 2009. 4)

## 제2장 업무 절차

### 2-1 업무 흐름도

단계	업무흐름	설계자	설계감독관	신기술 적용 검토·승인 부서	시설 사용부대	국방부	비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기술제안</li> <li>• 신기술 적용 설계</li> <li>• 신기술 적용 보고</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기술 적용 설계 검토</li> <li>• 신기술 적용 보고 검토</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기술제안</li> <li>• 신기술 적용보고</li> <li>• 신기술 평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기술 제안</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기술제안</li> <li>• 신기술평가</li> </ul>	
신기술 적용 제안	<pre> graph TD     A[신기술 신자체에 대한 정보 수집 및 요구 작성] --&gt; B[설계자의 신기술 적용 제안서 작성]     </pre>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방부로부터 적용권고 받은 신기술에 대한 적용 대상공사를 검토 및 사용 부대로부터 요구 받은 신기술 적용을 검토</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기술에 대한 특정한 요구 사항이 있을 경우 설계기본 요구 조건에 이를 기재</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기술관련 부서에 신기술 정보를 제공</li> <li>• 신기술관련 부서에 신기술 적용을 권고</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기술의 제안은 신기술관련 부서, 사용 부대, 설계자 누구나 가능</li> </ul>

단계	업무흐름	설계자	설계감독관	신기술 적용 검토·승인 부서	시설 사용부대	국방부	비고
신기술 적용 검토	설계감독관의 신기술 적용검토서작성		• 설계자가 제출한 신기술 적용 제안서를 검토하고 이를 토대로 신기술 적용 검토서를 신기술관련 부서에 제출				• 신기술 적용 검토 설계자는 사용 부대나 신기술관련 부서가 요구한 신기술에 대해 적용가능성 (기술력 및 경제성 평가)을 자체평가 하고 설계감독관에게 제안서를 제출해야 한다.
신기술관련부서의 승인	신기술관련부서의 신기술 적용승인		• 신기술 적용 검토서 작성 신기술관련 부서에 제출	• 설계감독관이 제출한 신기술 적용검토서를 승인 • 불가사항으로 판명될 경우, 설계자에게 재검토 지시 • 사용부대에 신기술 적용 여부에 대한 사항을 통보			
신기술의 설계 적용	신기술 적용 설계 설계성과품 검수	• 신기술 적용 설계 • 성과품의 납품	• 설계자에게 신기술을 적용하여 설계할 것을 통보 • 설계에 신기술을 적용하였는지의 여부 확인				• 신기술 적용 설계시 발주처 (기관)에서는 기술개발자와 설계/시공에 관련하여 협약서를 체결해야 한다
시공완료후 업무	신기술 적용 시공 신기술 적용 보고서 작성 사용자 의견서 작성 시험시공평가서 작성	시공자	공사감독관	신기술 적용 검토·승인 부서	시설 사용부대	국방부	• 시공방식을 이해 할 수 있는 보조 설계도면 (상세도등)의 충분한 작성이 이루어졌는지를 꼭히 확인할 것
			• 시공자는 신기술 적용 보고서를 작성하여 시공감독관에게 제출	• 공사감독관은 신기술 적용 보고서를 확인하고 신기술 관련 부서에 제출 • 시험시공의 경우는 시험시공평가서를 작성하여 국방부에 제출	• 사용자 의견서를 신기술 관련부서에 제출		• 신기술 적용 보고서 (또는 시험시공 평가서)를 검토하고 기타용역에의 적용 여부 등을 판단·제안 필요할 경우에는 직접 시험 시공 평가

## 2-2 신기술 적용 제안

### 1. 설계자의 신기술 적용제안서 작성 및 제출

- 가. 설계감독관은 설계자가 신기술 적용제안서를 신기술설명서와 함께 제출하도록 지시할 수 있다. 이때, 설계감독관은 특정 신기술의 적용성을 검토해 줄 것을 설계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 나. 설계자는 신기술 적용제안서와 신기술설명서를 작성하여 7일 이내에 설계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2. 신기술 설명서 및 신기술 적용제안서의 작성내용

설계감독관은 신기술 설명서 및 신기술 적용제안서가 다음의 내용으로 작성될 수 있도록 서면으로 지도하고 보완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서면으로 요청하여야 한다.

#### 가. 신기술 설명서의 작성내용

- 1) 기술개요
- 2) 구분
- 3) 분야
- 4) 특징
- 5) 기술내용의 공개성
- 6) 신청 기술관련 국내외 기술개발동향
- 7) 적용조건 및 시공방법
- 8) 국내외 유사기술과의 비교
- 9) 유의점
- 10) 적용실적
- 11) 타인의 권리와의 관계
- 12) 기술의 한계 및 추후 개발계획
- 13) 기타

#### 나. 신기술 적용제안서의 작성내용

- 1) 군특성 : 해당 군 건설공사에 적합한 기술인지의 여부를 설명할 것
- 2) 경제성 : 향후 경제력 평가 및 유지관리비
- 3) 시공성
- 4) 예상되는 민원사항에 대한 기술
- 5) 신기술 보호(특허)조건의 명기
- 6) 적용되는 제반 법률적 제제의 명기
- 7) 시공계획

## 2-3 신기술 적용 검토

### 1. 설계감독관의 검토서 작성 및 제출

- 가. 설계감독관은 신기술 설명서와 신기술 적용제안서를 검토하여 신기술 적용 검토서를 작성하고, 이를 각 분야 시스템 협의 및 결정업무(기본설계 발주청 협의) 이전에 신기술 관련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 나. 설계감독관은 신기술 적용제안서의 검토결과 적용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경우, 설계자에게 신기술 적용제안서 접수 후 14일 이내에 부적합 판단사유를 신기술 적용 검토서에 제시하고 부적합을 통보한다. 설계자가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신기술 관련부서에 신기술적용 평가서를 제출하여 판단을 의뢰 한다. 이 때, 신기술 관련부서, 설계감독관 및 설계자에게 이에 대한 판단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 다. 신기술 등을 설계에 포함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설계반영 단계에서 발주기관은 입찰공고전에 기술보유자와 기술사용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기술 사용 협약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분리발주 또는 다른 기술 등을 사용 할 수 있다.
- 라. 신기술적용 부적합 판단사유 “예시”
- 1) 검토결과 제안서 허위작성 등의 결격사유가 발생한 경우
  - 2) 기대하고 있는 효과에 현저하게 미달하는 경우
  - 3) 보완권고 사항을 기일내 보완하지 않은 경우
  - 4) 국방부가 부적합 신기술로 판단한 신기술인 경우
  - 5) 기타 군 특성상 현저한 적용불가 사유가 발생한 경우

### 2. 신기술 적용검토서 작성내용

신기술 적용검토서는 다음의 내용으로 작성되어야 하며,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설계감독관은 해당 신기술을 이미 적용한 현장을 실사하고 현장 실사보고서를 작성한다.

#### 가. 군특성

- 1) 해당 공사에 필요하고 적합한 기술인지의 여부판단
- 2) 경제성과 무관하게 필히 신기술을 적용해야 하는 기술인지의 여부판단

#### 나. 경제성

- 1) 국방부 설계와 동등이상의 기능·효과를 가진 기술, 공법, 기자재를 사용 함으로써 기능발휘가 현저하게 증가하거나 또는 친환경성 여부판단
- 2) 공사비가 기존설계와 대등 여부 판단 및 유지관리비 평가

#### 다. 시공성

- 1) 시험성적 평가 및 자체 시험시공 여부 판단
- 2) 시공기간의 단축여부 비교

라. 현장 적용시 예상되는 민원등의 문제 발생 가능성

1) 필요시 관계부처 협의

2) 환경문제검토

마. 신기술 보호(특허)조건의 명기

바. 적용되는 제반 법률적 제재의 명기

사. 개략시공계획

1) 시공 공종명 및 수량

2) 자재 소요량 및 소요시기별 공급계획(공급일정 및 공급량)

## 2-4 신기술 관련부서의 승인

### 1. 적용승인

가. 신기술 적용 검토·승인 담당부서는 설계감독관이 작성·제출한 신기술 적용검토서등을 평가하고, “신기술활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통해 신기술 적용의 승인여부를 설계 감독관에게 통보한다. 위원회의 구성, 심의절차 및 세부심의대상 등은 각군 및 국직기관 등 집행기관에서 별도 규정한다.

나. 신기술 관련부서는 해당공사에 대한 신기술적용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판단사유를 설계자와 설계 감독관에서 서면으로 통보한다.

### 2. 승인면제

이미 군 건설공사에 적용되어 해당공종의 시공이 완료된 신기술에 대해서는 신기술 관련부서의 적용승인 없이도 설계 감독관은 신기술의 적용여부를 판단하여 적용할 수 있다. 다만, 승인심의가 생략된 경우에도 설계 감독관은 경제성, 기술력 분석은 시행한다.

## 2-5 신기술의 설계적용

### 1. 설계자의 설계적용

설계자는 적용 승인된 신기술 및 우수제품에 대하여 상세도면 및 설명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이 때 시공순서 설명도면, 특기시방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 2. 적용여부확인

설계감독관은 신기술에 대한 사항이 설계에 제대로 적용되었는지 등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 2-6 시공 후 업무

### 1. 문제점 발견 시

신기술, 신재료를 적용하여 시공하는 도중 예상치 못한 중대한 문제가 발생된

경우, 공사감독관은 시공중단을 명령할 수 있다. 또한 공사감독관은 신기술 관련 부서에 이를 통보하여야 하며, 신기술 관련부서는 이 경우 심의를 거쳐 해당 신 기술에 대한 적용불가방침을 각 군에 통지할 수 있다.

## 2. 신기술 적용결과보고

- 가. 신기술, 우수제품 적용 시공 후, 시공자는 신기술적용보고서를 해당공정의 완료 후 4주 이내에 공사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공사감독관은 이를 검토하고 신기술 관련부서에 제출한다 .
- 나. 신기술관련부서는 시험사용부대의 사용의견서를 첨부하여 신기술적용보고서를 국방부에 제출한다. 해당공사가 시험시공이었을 경우에는 시험시공평가서에 효과, 성능, 공사비절감, 문제점 및 개선방안 등을 포함하여 작성하고 국방부에 제출한다.
- 다. 국방부는 신기술적용보고서 또는 시험시공평가서를 검토하고 기타용역에 적용할 것인지의 여부 등을 판단하여 이후의 적용을 제안할 수 있다. 필요할 경우에는 시험시공평가를 국방부가 행할 수 있다. 또한, 신기술적용보고서 검토 시 신기술적용에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경우에는, 이후 용역에서 해당 신기술에 대해 신기술 적용검토서를 다시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문제가 심각하다고 판단되는 신기술에 대해서는 심의를 거쳐 이후 적용이 불가하다는 방침을 각 군에 통지할 수 있다.

## 제3장 신기술 현장적용 기준

### 3-1 목적

이 기준은 건설기술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지정·고시된 신기술(이하 “신기술”이라 한다)의 현장적용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3-2 위원회의 심의 등

1. 발주청(기관)은 건설공사 시행시 다음 각 호의 1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 가. 건설공사에 반영할 신기술의 설계, 시공, 계약방법 등의 적정성 여부
  - 나. 제1호의 계약방법중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26조제1항 제4호마목 및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25조제4호 마목의 규정에 근거한 수의계약일 경우 공사의 특성 등에 부합되는지 여부
  - 다.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34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거 권고받은 시험시공의 실시여부
  - 라. 기타 신기술의 현장적용과 관련한 사항
2. 발주청(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때에는 그 결과를 건설공사의 설계에 반영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3. 발주청(기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건설공사의 설계에 반영된 신기술에 대하여 현장여건의 변동이 있거나 신기술개발자가 신기술제공을 거부하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설계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위원회의 재심의를 받아 당해 신기술을 타공법으로 설계변경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4.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은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21조제2항 및 제6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5. 신기술공사비가 1억원 미만인 경우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발주청(기관) 소속직원 및 2명 이상의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별도의 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다.
6. 발주청(기관)은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신기술 제공을 부당하게 거부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설계변경한 경우에는 향후 6개월 이상 18개월 이하의 기간을 정하여 그가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대해 신기술의 사용을 배제할 수 있다.
7. 발주청(기관)은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 그 결과를 별지 제1호서식의 신기술활용심의 관리대장에 의하여 관리하여

야 하며, 그 결과를 매반기 말일을 기준으로 다음달 15일까지 국토해양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3-3 유사신기술의 활용

- 발주청(기관)은 건설공사 시행시 3-2의 1항 각 호의 1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발주청(기관)은 적용하려는 신기술과 유사한 신기술이 있는 경우 설계 및 제한경쟁입찰 등의 절차에서 유사신기술을 배제하지 말아야 한다.

### 3-4 신기술의 사후관리 등

- 발주청(기관)은 그가 시행하는 당해연도 건설공사에 신기술을 적용하여 준공한 때에는 준공일부터 1개월 이내에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사후평가서를 작성하고 이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후평가서를 신기술의 현장적용 등에 활용될 수 있도록 기술평가기관에 통보하고 이를 관리하도록 조치할 수 있다.
-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후평가서를 통보받은 기술평가기관은 이를 축적 및 분석하기 위해 건설신기술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 제4장 녹색제품 사용기준

### 4-1 공사 계획시 적용기준

1. 공사를 설계 시 사용하고자 하는 제품에 녹색제품이 있는 경우에는 녹색제품 사용을 반영하여야 한다.
2. 녹색제품은 사용단계에서 환경영향을 최소화하고, 환경복원비용을 절감 할 수 있는 제품으로 설계 및 시공사가 녹색제품 사용을 계획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 친환경 건축물 인증대상 시설은 녹색제품을 적극 사용하여야 한다.

### 4-2 설계 및 시방서 작성시 적용기준

1. 발주(설계)단계에서 녹색제품의 건설자재를 우선 적용이 가능하도록 입찰안내서, 설계용역조건에 반영하여야 한다.
2. 구매하고자 하는 품목에 다수의 녹색제품이 있는 경우에는 대상제품의 품질, 가격 등을 비교하여 녹색제품 중 구매목적에 가장 적합한 상품을 구매한다.

### 4-3 용역계약시 적용기준

1. 발주하는 용역에 녹색제품이 있는 경우에는 녹색제품을 구매하여야 한다.
2. 자체 사용 및 제공을 목적으로 용역계약자가 구매하는 품목에 녹색제품이 있는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녹색제품을 구매하여야 한다.
3. 용역계약자는 녹색제품 의무구매 예외사항 등을 검토하여 구매하고자 하는 제품을 구매할 수 있는지를 검토한다.

### 4-4 의무사용 예외사항

1. 구매하고자 하는 품목에 녹색제품이 없는 경우와 구매가 제한되는 경우, 녹색제품 공급이 원활하지 못하거나 장기간 소요되는 경우, 녹색제품의 현저한 품질저하 등의 이유로 구매목적의 달성이 어려운 경우에는 녹색제품 구매를 예외 할 수 있다.
2.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한 우선구매 규정을 이행하기 위하여 녹색제품 외의 제품을 구매할 수 있다.
3. 긴급한 수요의 발생 등 불가피한 사유로 녹색제품의 구매가 어렵거나, 가격이 지나치게 높아 당해 회계연도내의 예산으로 계획된 제품구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녹색제품 구매를 예외 할 수 있다.

## 별지1 신기술문서양식

### [별지 제1호서식]

# 신기술활용심의 관리대장

1) 심의 관련 서류 등 증빙자료는 별도 사본 첨부

[별지 제2호서식]

## 신기술 사후평가서

### 1. 신기술 및 공사개요

신기술명	(지정번호 : )			
기술개발자				
공 사 개 요	발주청(기관)(명칭전체)		계약형태	<input type="checkbox"/> 일반경쟁 <input type="checkbox"/> 제한경쟁 <input type="checkbox"/> 지명경쟁 <input type="checkbox"/> 수의계약 <input type="checkbox"/> 기타( )
	공사명(계약시)			
	현장주소	시(도) 구(시, 군)	동(읍, 면)	리(동, 번지)
	총공사비		신기술 적용공사비	
	공사기간	년 월 일 ~	계약 번호	
		년 월 일	입찰공고번호	
시공자		사후평가일	년 월 일	
		감리자		

### 2. 활용 평가

평가 항목	기준기술대비 수준(50~150)	평가내역(복수 체크 가능)	
공사비절감	( )		
공기단축	( )		
시공성	( )	<input type="checkbox"/> 시공 난이도 <input type="checkbox"/> 시공관련 계획 및 설계 편리성 <input type="checkbox"/> 인적, 물적 자원 조달 <input type="checkbox"/> 기타 : (※ 상기 이외의 내용이 있을 경우 간략히 기재)	<input type="checkbox"/> 시공현장 관리 용이성 <input type="checkbox"/> 공정관리의 편리성 <input type="checkbox"/> 시공제한 극복
품질향상	( )	<input type="checkbox"/> 사용성 <input type="checkbox"/> 기능 및 외관 개선 <input type="checkbox"/> 유지관리 · 보수 용이성 <input type="checkbox"/> 기타 :	<input type="checkbox"/> 내구성 <input type="checkbox"/> 구조적 안정성 <input type="checkbox"/> 자재(재료)의 규격화 · 표준화
안전성	( )	<input type="checkbox"/> 시공상 위험도 저감 정도 <input type="checkbox"/> 건설현장 관리의 안전성 <input type="checkbox"/> 기타 :	<input type="checkbox"/> 기계화 또는 자동화
환경친화성	( )	<input type="checkbox"/> 인체 · 자연 친화성 <input type="checkbox"/> 에너지 · 자원 절감 <input type="checkbox"/> 기타 :	<input type="checkbox"/> 건설공해(소음/진동/먼지) 저감 <input type="checkbox"/> 환경부하 저감(폐기물 발생 및 재활용, 수질개선 등)
만족도	( )	매우우수(30%이상), 우수(20%이상), 양호(10%이상), 보통(0%), 미흡(0%미만)	
평균			

\* “기준기술대비 수준”에는 동종의 기준기술 적용시를 기준(100)으로 신기술 적용시 해당 항목의 수준을 신기술 적용부분 또는 전체 건설공사에 기여도를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기재하고, 평가내역에는 기준기술대비 향상 비율 산정근거를 간략히 기재  
(공사비절감, 공기단축 항목의 경우 절감금액, 단축일 내역 등을 기재)

### 3. 발주청(기관) 의견(유사한 현장에 적용시 참고할 수 있도록 상세히 기술)

신기술 채택 사유	<input type="checkbox"/> 자체채택	<input type="checkbox"/> 추천채택	<input type="checkbox"/> 기타
<p>○ 세부 내용 :</p>   <div style="background-color: #f0f0f0; padding: 5px;"><u>시공조건(여건)</u></div> <p>* 해당 공사 관련 현장여건, 시공과정 등 시공조건을 기술</p>   <div style="background-color: #f0f0f0; padding: 5px;"><u>하자발생여부 및 조치결과</u></div> <p><input type="checkbox"/> 발생    <input type="checkbox"/> 미발생</p> <p>○ 조치결과 : (※ 하자 '미발생' 체크시에는 생략 가능)</p>   <div style="background-color: #f0f0f0; padding: 5px;"><u>신기술 적용 전·후의 기대 및 실제효과 비교</u></div> <p>○ 적용 전 기대효과 :</p> <p>○ 적용 후 실제효과 :</p>   <div style="background-color: #f0f0f0; padding: 5px;"><u>다른 공사현장에의 추천 여부 및 그 사유</u></div> <p><input type="checkbox"/> 추천    <input type="checkbox"/> 미추천</p> <p>* 추천 또는 미추천 사유</p>   <div style="background-color: #f0f0f0; padding: 5px;"><u>문제점 및 개선요구사항</u></div>   <div style="background-color: #f0f0f0; padding: 5px;"><u>기타 참고사항</u></div>			